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리적인 사용료 반환

- 구미시의 사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때 총사용료의 10%를 배상하거나 공제한다는 규정 개정(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T/F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구미시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사곡동 434번지”를 “박정희로 211(사곡동)”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장 시설”이라 함은”을 ““교육장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장의 사용”이라 함은”을 ““교육장의 사용”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자”라 함은”을 ““사용자”란”으로 한다.

제4조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시 자진”을 “시”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될 때”를 “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신청인이 사용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구미시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 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 영에 관----- -----.
제2조(위치) 교육장은 구미시 사 곡동 434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박 정희로 211(사곡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교육장 시설”이라 함은 교육 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1.“교육장 시설” 이란----- -----.
2. “교육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 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음 향, 영상장비, 광고물의 게시,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2.“교육장의 사용” 이란----- ----- ----- -----.
3. “사용자”라 함은 교육장 시설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 한다.	3.“사용자”란----- ----- ---.
제4조(사용범위) 교육장의 사용범 위는 교육장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용범위) ----- -----한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교육장을 사	제5조(사용허가) ① -----

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변경·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신청의 내용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 5. (생략)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교육장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② -----

-----따른-----
-----.

③ -----

-----따른-----
-----.

④ -----

-----따른다.-----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

- 1.-----따른-----

2. ~ 5.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

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
시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같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따라-----

-----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
-----.

1.-----

-----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일 3일 전까지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3. 신청인이 사용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 따른 -----

-----.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
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
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7조(원상복구 및 안전관리) ①
(생 략)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시장이 이에 갈음하여 원
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③ · ④ (생 략)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

----. 다만-----

-.

제17조(원상복구 및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따
른 -----

-----.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소관 실·과		안전재난과
입 안 자	과 장	설동주
	담 당	이정규
	담 당 자	김중석 (480-6749)